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299호로 2024년 2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초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 4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2. 14. ~ 2024. 1. 3. / 20일 간):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대면발급을 비대면발급으로 유도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수수료의 감면)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¹⁾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관련된 민원 증명서는 총 12종²⁾임.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5호

2)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단위: 원)

업무	민원증명	종	현행 수수료	개정 후 수수료	온라인 발급 (민원24)
계		12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2	200	무료	무료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500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제적	제적등본	1	500		
	제적초본	1	300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음. “감면”의 국립국어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으로 되어 있는바, 개정을 통한 조항 신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구민이 줄어들어 유연하게 행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세입 감소³⁾보다 추후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의 폭이 더 넓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설치된 총 41대⁴⁾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유동 인구가 많고, 상업지역에 속하는 여의동 현장민원실, 여의도역 같은 경우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이용자는 구민이 아닌 자들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3)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중 등·초본, 가족관계관련 수수료 수입: 51,626천 원(구 제외수입의 0.04%)

4) 동주민센터 18대 설치, 동주민센터 외(구청, 현장민원실, 역사, 주요 병원·은행 등) 23대 설치

참 고 자 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 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